

과징금 제외대상(제26조제1항 관련)

1. 위생용품제조업 및 위생물수건처리업

가. 별표 7 II. 개별기준의 제4호가목 및 다목2)에 해당하는 경우

나. 1차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영업정지 1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위
반사항으로서 2차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

다. 3차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

라. 과징금을 체납 중인 경우

2. 위생용품수입업

가. 별표 7 II. 개별기준의 제5호가목 및 다목2)에 해당하는 경우

나. 1차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영업정지 1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위
반사항으로서 2차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

다. 3차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

라. 과징금을 체납 중인 경우

3.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별표 7 I. 일반기준의 제11호 각 목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감대상인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다.